

##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1조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제1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함) 2부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제1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 시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 시간 및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 변경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다시 작성한다.(필요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대상자(보호자)에게 전체공지 또는 개별 안내할 수 있다.

####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대상자의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

#### 제17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증명서

상품명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I) (요양보호사)

원본

## ● 기본사항

|      |                                         |                         |       |              |
|------|-----------------------------------------|-------------------------|-------|--------------|
| 보험기간 | 2025.01.01.00:00 부터 2026.01.01.00:00 까지 |                         | 증권번호  | 2024-0067929 |
| 피보험자 | 업체명                                     | 정다운재가복지센터               | 사업자번호 | 646-80-03106 |
|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여로60번길 6 |       |              |
| 목적물  | 요양보호사(재가/방문요양,방문목욕)                     |                         |       |              |

## ● 보험료사항

|        | 총보상한도액 |            | 총보험료 |        | 당회보험료 |        | 환율  |
|--------|--------|------------|------|--------|-------|--------|-----|
| 화폐     | WON    | 32,000,000 | WON  | 35,100 | WON   | 35,100 | WON |
| 원화환산금액 | WON    | 32,000,000 | WON  | 35,100 | WON   | 35,100 |     |

## ● 목적물부호

|        |                                                                                     |  |  |  |  |  |
|--------|-------------------------------------------------------------------------------------|--|--|--|--|--|
| 목적물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여로60번길 6                                                             |  |  |  |  |  |
| 담보위험   | 피보험자가 전문인으로서 업무를 수행 중에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혀 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 부담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보상함 |  |  |  |  |  |

| 약관사항                                          |  | 목적물 상세      |      |
|-----------------------------------------------|--|-------------|------|
|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I 보통약관                            |  | 보험담보지역 구분코드 | 대한민국 |
| 보험료 정산특별약관 적용                                 |  |             |      |
| 테러행위 면책특별약관                                   |  |             |      |
| 날짜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특별약관                            |  |             |      |
| 피보험자 적용 추가특별약관(요양보호사 재가급여서비스) [재직중인 전문인 자동담보] |  |             |      |

| 담보/특약 |              | 화폐  | 보상한도액      |            |            | 공제금액    |
|-------|--------------|-----|------------|------------|------------|---------|
|       |              |     | 1인당        | 1사고당       | 총보상한도액     | 사고당     |
| 1     | 요양보호사배상책임 대인 | WON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100,000 |
| 1     | 요양보호사배상책임 대물 | WON |            | 2,000,000  |            | 100,000 |

## ● 자필서명

※ E-mail :

(수신동의 ☐ : 각종 우편안내문 E-mail, 전자문서 등으로 수령합니다.)

|         |    |                  |
|---------|----|------------------|
| 보험료입금계좌 | 신한 | 562-00-642591124 |
|         | 농협 | 0317-00-64425531 |
|         | 국민 | 439290-78-253343 |

## [기타사항]

※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는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발행된 것이며, 실제 계약 내용은 청약서 및 해당 상품의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 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는 관계법령 및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       |                  |
|------|------------------|-------|------------------|
| 담당지점 | 법인영업1파트          | 영업담당자 | 씨인스원보험대리점        |
|      | (☎ 02-3788-2626) |       | (☎ 02-2246-8024) |



MG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  
관리인

유신호



##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수급자/보호자 안내용)

2025.01.01 시행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

**월 한도액** 등급별 한 달(매월 1일~ 및 일)동안 재가급여(요양,목욕,간호,주야간/단기보호 비용합산) 이용한도 금액  
**급여비용 가산** 야간, 일요일 급여비용 의 30% 가산적용 /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급여비용의 50% 가산 적용  
**본인부담금**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납부해야하는 금액

### 재가급여 등급별 이용 월 한도액 (복지용구제외)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 한도액초과             | 추가산정                 |
|-------|-----------|-----------|-----------|-----------|-----------|---------|-------------------|----------------------|
| 월 한도액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                      |
| 추가산정  | 2,537,040 | 2,291,740 | 1,782,840 | 1,644,720 | 1,412,400 |         | 초과금액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 | 주야간 월15일 이상(가족요양 제외) |
| 24년한도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                      |
| 24년대비 | +236,500  | +213,800  | +29,900   | +28,800   | +25,400   | +13,700 |                   |                      |
| 상승률   | 10.3%     | 10.3%     | 2.0%      | 2.1%      | 2.2%      | 2.1%    |                   |                      |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 구분      | 30분이상  | 60분이상  | 90분이상  | 120분이상 | 150분이상 | 180분이상 | 210분이상 | 240분이상 |
|---------|--------|--------|--------|--------|--------|--------|--------|--------|
| 급여비용    | 16,940 | 24,580 | 33,120 | 42,160 | 49,160 | 55,350 | 61,670 | 68,030 |
| 24년비용   | 16,630 | 24,120 | 32,510 | 41,380 | 48,250 | 54,320 | 60,530 | 66,770 |
| 24년대비   | +310   | +460   | +610   | +780   | +910   | +1,030 | +1,140 | +1,260 |
| 상승률     | 1.8%   | 1.9%   | 1.8%   | 1.9%   | 1.9%   | 1.9%   | 1.8%   | 1.9%   |
| 본부금 24년 | 2,490  | 3,610  | 4,870  | 6,200  | 7,230  | 8,140  | 9,070  | 10,010 |
| 본부금 25년 | 2,540  | 3,680  | 4,960  | 6,320  | 7,370  | 8,300  | 9,250  | 10,200 |

### 가족요양(60분) 급여비용

| 구분      | 1일(60분) | 20일     |
|---------|---------|---------|
| 급여비용    | 24,580  | 491,600 |
| 15% 본부금 | 3,680   | 73,740  |
| 9% 본부금  | 2,210   | 44,240  |
| 6% 본부금  | 1,470   | 29,490  |

### 가족요양(90분) 급여비용

| 구분      | 1일(90분) | 30일     | 31일       |
|---------|---------|---------|-----------|
| 급여비용    | 33,120  | 993,600 | 1,026,720 |
| 15% 본부금 | 4,960   | 149,040 | 154,000   |
| 9% 본부금  | 2,980   | 89,420  | 92,400    |
| 6% 본부금  | 1,980   | 59,610  | 61,600    |

### 15% 본인부담금

| 구분  | 180분이상  | 240분이상  |
|-----|---------|---------|
| 1일  | 8,300   | 10,200  |
| 15일 | 124,530 | 153,060 |
| 20일 | 166,050 | 204,090 |
| 21일 | 174,350 | 214,290 |
| 22일 | 182,650 | 224,490 |
| 23일 | 190,950 | 234,700 |
| 24일 | 199,260 | 244,900 |
| 25일 | 207,560 | 255,110 |

### 9% 본인부담금

| 구분  | 180분이상  | 240분이상  |
|-----|---------|---------|
| 1일  | 4,980   | 6,120   |
| 15일 | 74,720  | 91,840  |
| 20일 | 99,630  | 122,450 |
| 21일 | 104,610 | 128,570 |
| 22일 | 109,590 | 134,690 |
| 23일 | 114,570 | 140,820 |
| 24일 | 119,550 | 146,940 |
| 25일 | 124,530 | 153,060 |

### 6% 본인부담금

| 구분  | 180분이상 | 240분이상  |
|-----|--------|---------|
| 1일  | 3,320  | 4,080   |
| 15일 | 49,810 | 61,220  |
| 20일 | 66,420 | 81,630  |
| 21일 | 69,740 | 85,710  |
| 22일 | 73,060 | 89,790  |
| 23일 | 76,380 | 93,880  |
| 24일 | 79,700 | 97,960  |
| 25일 | 83,020 | 102,040 |